

기숙사 운영 규정

무주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협동심이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무주교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명칭) 본 기숙사는 무주고 생활관으로 덕유관(1~4층)이라 칭하며, 이하 '기숙사'라 약칭한다.

제3조 (운영) 기숙사 운영에 따른 경비는 기숙형고 기숙사운영 교부금, 수익자 부담금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외부 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기간) 기숙사의 운영 기간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학교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기숙사의 모든 시설은 기숙사생과 관리요원에 한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생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승인을 받아 일반 학생과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 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 (기숙사 운영위원회)

- ① 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1인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 교감
 2. 부위원장 : 기숙사 운영부장
 3. 위 원 : 1학년부장, 3학년부장, 기숙사사감 1명, 학부모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 자치회 대표 2명은 사안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③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 ④ 면학 분위기 조성 대책에 관한 사항
- ⑤ 생활 수칙 및 일과표 제정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숙사 사감 및 운영부장)

- ① 기숙사 운영을 위해 전담 사감 2인을 두며, 기숙사 운영부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운영부장 및 전담사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학생의 기본권(휴식권, 수면권) 존중
 2. 경쟁적 교육 여권 조성(평등권 침해) 지양
 3. 면학 분위기 조성
 4. 규범 존중 생활 태도 지도
 5. 안전 지도
 6. 보건 위생 지도
 7. 외출, 외박 및 기숙사생 관리
 8. 입사, 퇴사에 관한 일

9.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

- 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둔다.
- ② 자치회 임원 6인(1학년 1명, 2학년 남녀 각 1인, 3학년 남 2명, 여 1명)은 입사생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③ 자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자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사안에 따라 자치회 대표 2인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절 입사

제12조 (입사자격) 기숙사의 입사는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고, 그 보호자가 입사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자격이 있다.

- ① 학생 선도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3일 이상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② 건강에 이상이 없고, 전염병·피부병 등 감염성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가 아닌 자
- ③ 기숙사 생활에 대한 부적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자는 퇴사 후 다음 학기까지 재입사를 금지한다. 또한, 퇴사 이후 재입사 신청 시 한 번도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의 후순위에 두고 선발하고, 동등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퇴사 후 1년 후부터로 한다.
- ④ 학교의 육성종목 선수 및 기타 입사를 희망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13조 (입사절차) 운영부장은 정해진 입사 시기(3월, 9월)가 되기 전에 학년별 결원을 파악하고 보충 예정 인원을 홍보하여야 하며,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교사, 보호자와 상의한 후 입사 지원서를 운영부장에게 제출한다.
- ② 입사 결정은 기숙사 운영부장교사의 자격 검토 및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입사 학생은 소정의 생활안내교육을 받고 숙소 및 열람실 좌석을 배정받는다.
- ④ 입사자는 입사 시에 서약서와 결핵 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입사자는 매월 1일에 입사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입사자 선정):

① 1~3층

- 1. 입사 가능한 인원은 총 104명(남 52명, 여 52명)이다.
- 2. 운영부장은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자 중 1순위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2순위 원거리 학생1(타군 및 무주군 면지역 거주 학생), 3순위 원거리 학생2(무주읍이지만 버스 통학 학생, 대차리, 용포리, 오산리, 장백리, 가옥리, 내도리, 유속리 등) 4순위 도보 통학하는 무주읍 거주 학생(추첨으로 선발)의 순으로 서열부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사정하여 선정한다.

② 4층

- 1. 입사 가능한 인원은 총 25명(남 10명, 여 15명)이다.
- 2. 운영부장은 제 11조, 12조 규정에 의거 희망하는 3학년 학생 중, 남녀 인원을 고려하여 서열부를 작성하여 추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사정하여 선정한다.
- ③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①, ②항에 의거 입사생을 선정한다. (결원이 있는 경우는 ①, ②항에 의거 입사 대기자 서열부를 작성하고 순서에 의해 매월 1일에 입사한다.)
- ④ 학교의 육성종목 선수 및 기타 입사를 희망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규정(무주고 입사 선발 규정)에 의한다.

제2절 퇴사

제15조 (퇴사)

- ①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진 퇴사와 기숙사 규정에 의한 강제 퇴사로

구분한다.

- ② 자진 퇴사는 학생이 희망할 때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③ 강제 퇴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1. 감염되는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
 - 2. 학생 선도규정에 의거 3일 이상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3. 기숙사 내에서 폭력행사, 집단폭행, 음주, 흡연, 금품 절취 또는 갈취, 도박(카드, 화투, 기타), 풍기문란(학생 신분을 벗어난 기숙사 내 신체접촉 등의 이성 교제) 등을 한 자
 - 4. 교직원과 사감 등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거나 폭행을 한 자
 - 5. 외부인 취침을 허용한 자
- ④ 강제 퇴사 기간(임시 및 영구)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경중을 논하여 결정한다.

제16조 (퇴사 절차) 퇴사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학생은 보호자와 상의하고, 전담사감(운영부장)과 상담한 후 퇴사원을 운영부장에게 제출한다.
- ② 운영부장은 퇴사원을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운영부장은 퇴사가 확정된 학생과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 ④ 퇴사는 매월 말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매월 말 일 이전 자진 및 강제 퇴사자에게 조·석식비 및 수익자 부담 운영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전학 등)일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 (퇴사자의 재입사)

- ① 자진 퇴사자의 경우 제12조의 ③항에 의거하여 재입사 할 수 있다.
- ② 강제 퇴사자(영구)는 재입사할 수 없다.

제 4 장 재 정

제18조 (재정운영)

- ① 기숙사 운영은 기숙형고 기숙사운영 교부금과 수익자 부담 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숙사 운영비는 무주고등학교회계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19조 (예결산) 기숙사의 예·결산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0조 (기숙사비)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3조의 규정과 같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납부하도록 한다.

- ①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숙사 비는 조·석식비와 수익자 부담 운영비이다.
- ② 매월 말 일 이전 자진 및 강제 퇴사자에게 조·석식비 및 수익자 부담 운영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중에 퇴사한 경우는 조·석식비는 일수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수익자 부담 운영비는 10일 단위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 ③ 사전(15일 이전)에 허락된 정당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결식한 경우는 식비 및 수익자 부담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기타 기숙사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 ⑤ 사회배려계층에 포함되지 않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기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지자체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예산 집행) 기숙사의 모든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행정실에서 집행한다.

제5장 사감 등의 업무

제22조 (위생 점검) 전담사감은 기숙사내의 각 호실, 집기, 화장실, 복도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과 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소독 및 대

청소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제23조 (시설물 점검) 전담사감은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보수를 행정실에 요구한다.

제24조 (전담사감의 업무) 사감은 다음 각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사감의 근무 시간은 무주고 운영 시간표에 의하여 행한다.
- ②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
- ③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한다.
- ④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일지에 기록하고 조치한다.
- 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⑥ 점호시간을 설정하여 건강지도, 안전 지도, 생활지도, 청소 지도, 생활 예절 및 기숙사비 납부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도를 한다.
- ⑦ 학생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고 애로사항 정취와 상담을 통해 고민과 어려움 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 ⑧ 외출, 외박 등 기숙사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장 생활수칙

제25조 (외출 및 외박)

- ① 외출은 전담사감(운영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행한다.
- ②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특별한 사유 시 보호자의 허락(연락)이 있을 경우 전담사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행한다.

제26조 (생활지침)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한다.

- ① 기숙사를 내 집같이, 각 호실을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 ②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 ③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손을 대지 않는다.
- ④ 단정한 모습으로 오전 8시 15분까지 등교한다.
- ⑤ 생활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 ⑥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기숙사 규정에 맞게 정숙한 생활을 한다.

⑦ 자신의 기숙사 생활 태도를 엄밀히 점검하고 기록하여 생활한다.

제27조 (자기주도 학습 생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생활한다.

- ① 정해진 좌석을 이용하고 학습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정돈 한다.
- ② 전등 및 컴퓨터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 ③ 컴퓨터 사용 시 개인정보 및 개인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하고 다운 자료 등이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다.
- ⑤ 컴퓨터 앞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며 입출력 장치를 잘 관리한다.

제7장 안 전 교 육

제28조 (보건위생 · 안전교육)

- ① 보건위생 및 안전 · 재난 사고 예방 사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 ② 소방 · 피난 설비 기능 유지와 화재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 의식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점검 및 화재대피 훈련을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③ 입소 시 및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위원장의 결재가 있으면 본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규정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규정 1】

무주고 입학 선발 규정

1. 선발 원칙

가. 1~3층

- 1) 입학 가능한 인원은 총 104명(남 52명, 여 52명)이다.
- 2) 운영부장은 제 11조, 12조 규정에 의거 입학 지원서를 제출한 자 중 1순위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2순위 원거리 학생1(타군 및 무주군 면지역 거주 학생), 3순위 원거리 학생2 (무주읍이지만, 버스 통학 학생, 오산리, 대차리, 용포리, 장백리, 가옥리, 내도리, 유속리 등), 4순위 도보 통학하는 무주읍 거주 학생(추첨으로 선발)의 순으로 서열부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사정하여 선정한다.

나. 4층

- 1) 입학 가능한 인원은 총 25명(남 10명, 여 15명)이다.
- 2) 운영부장은 제 11조, 12조 규정에 의거 희망하는 3학년 학생 중, 남녀 인원을 고려하여 서열부를 작성하고 추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사정하여 선정한다.

2. 선발 인원

- 가. 총 선발 인원은 129명으로 한다.(학교 사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도 있음)
- 나. 덕유관은 총 104명(남 52명, 여 52명), 반딧불관은 총 25명(남 10명, 여 15명)을 선발하고, 학년·계열을 고르게 선발하나, 세부 선발 인원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다. 덕유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학생의 입학인원은 전체 입학 인원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한다. 다만, 운동부 입학 학생은 전체 입학인원에서 차감 산출한다.

3. 선발 시기

- 가. 1차 : 매 학기 시작 전(3월과 9월 이전)까지 선발한다.
 - 나. 2차 : 결원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공지 후 위의 선발 원칙에 따라 선발한다.
- ※ 학교 형편에 따라 무주고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 각 조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첨규정 2】

무주고 기숙사 생활수칙

1. 생활 수칙

- 가. 기숙사를 내 집처럼 각 호실을 내 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 나.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 시민 정신을 기른다.
- 다. 기숙사를 실력 향상 및 인격 도야의 장으로 삼는다.

2. 지켜야 할 사항

- 가. 시간 엄수 : 기상, 세면, 식사, 등교, 자율학습, 귀사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 나. 정숙 유지 : 실내 정숙, 조용히 걷기, 소리 나지 않게 문 여닫기, 각종 전자기기 소리 최소화 등
- 다. 청결 유지 : 각 실과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사물과 침대 이불 정리 정돈하며,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발생은 최소화한다.
- 라. 개인 위생 : 평상 시 개인위생에 유의하며 손·발씻기는 매일 취침 전에 하고, 샤워는 룸메이트와 서로 상의(4층 남학생 기숙사)하여 시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 마. 용의 복장 :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생활해야 하며,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한다.
- 사. 물자 절약 : 전등은 필요할 때만 켜고, 수돗물은 필요량만 사용하기
- 바. 건강 관리
 - 아침 점호 시 국민 체조 및 건강 운동 실시
 - 편식 및 과식 금지
 - 개인 비상 상비약 준비
 - 외출 외박 시 음식물 섭취 주의

3. 강제 퇴사

- 가. 감염되는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
- 나. 학생 선도규정에 의거 3일 이상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다. 기숙사 내에서 폭력행사, 집단폭행, 음주, 흡연, 금품 절취 또는 갈취, 도박(카드, 화투, 기타), 풍기문란(학생 신분을 벗어난 기숙사 내 신체접촉 등의 이성 교제) 등을 한 자
- 라. 교직원과 사감 등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거나 폭행을 한 자
- 마. 외부인 취침을 허용한 자

4. 기숙사 단기퇴사 기준

가. 최초 적발 시에는 1차 구두 경고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적발 시 나향의 단기 퇴사에 처한다. 단기 퇴사 후 같은 사안으로 추가 적발 시 1차는 구두 경고로, 2차 적발 시에는 1주일 퇴사는 2주일 퇴사로, 2주일 퇴사는 4주일 퇴사로, 4주일 퇴사는 강제퇴사 조치한다.

나. 1주일 퇴사

- 1) 청소상태 불량에 따른 이행 지시 위반
- 2) 점호상태 불량에 따른 이행 지시 위반
- 3) 자율학습 상태 불량 또는 자율학습 불참
- 4) 취침시간(23:30) 이후 다른 호실 출입
- 5) 소등 및 취침시간 위반
- 6) 기숙사 내에서의 의도적인 고함 또는 소란 행위
- 7) 상대를 비난하는 지나친 욕설 및 언쟁

다. 2주일 퇴사

- 1) 다른 호실의 허락을 받지않고 무단출입
- 2) 다른 호실에서의 취침
- 3) 인화물질 소지 및 반입
- 4) 허락받지 않은 식사 및 배달 음식 반입

라. 4주일 퇴사

- 1) 시설물 고의 파손

5. 기숙사 일과표

평 일		토 요 일	
06:50 ~ 07:00	기상·인원확인·체조	07:00 ~ 07:20	기상·인원확인·체조
07:00 ~ 07:30	조 식	07:20 ~ 07:50	세 면
07:30 ~ 08:10	개인위생 및 등교	07:50 ~ 08:00	청 소
08:10 ~ 18:20	학교생활	08:00 ~ 08:20	귀 가
18:20 ~ 19:20	석식 및 휴식	◇ 청소 및 정리: 22:00 ~ 22:30(수) ◇ 자기주도학습(희망자): 23:30 ~ 01:30 ◇ 공휴일에 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19:20 ~ 20:40	자기주도학습(1)		
20:40 ~ 21:00	휴식		
21:00 ~ 22:00	자기주도학습(2)		
22:00 ~ 23:00	휴식 및 개인 시간		
23:00 ~ 23:20	점호준비		
23:20 ~ 23:30	점호		
23:30 ~ 06:50	취침 및 수면		

6. 외출·외박 절차 안내

가. 외출 절차

- 1) 반드시 전담사감(운영부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외출한다.
- 2) 외출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하고 귀사시간을 준수한다.

나. 외박 절차

- 1) 정해진 귀가일자(토요일) 이외의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부모님의 연락에 의하여 반드시 사감의 허락을 받고 실시한다.
- 2) 월요일(또는 휴일 다음날 아침) 귀사시간을 엄수하고 방 정리정돈 후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

7. 개인이 준비할 물건

가. 개인 침구 (이불, 요, 베개, 침대커버 등)

나. 실내복 준비(운동 및 기숙사 생활)

다. 개인 세탁도구 준비(칫솔, 치약, 비누, 수건, 세탁세제, 화장지 등)

라. 개인 물컵 및 개인 용구(실내화)

마. 개인용 상비약 준비

바. 기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품 일체 등

8. 기타 안내 사항

- 각실 및 개인 열람석 청소 및 정리 정돈
- 휴식 시간 외 절대 이동 금지
- 퇴실 시 창문 및 출입문 시건 장치 확실히 할 것
- 개인 물건 정리 정돈
- 침구는 항상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을 것

기숙사 입사 원서

학년반 : 학년 반 번
 성 명 : (성별)

※ 신입생은 성명과 성별만 기재

위 본인은 기숙사에 입사함에 있어 교칙과 기숙사 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도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운영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퇴사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하면서 입사 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서명)

보호자 (서명)

주 소			입사자격 (해당란에 모두 ○표)	
본인연락처				
보호자성명	핸드폰 번호	집전화	사회배려대상자	
1.			원거리 학생1	
			원거리 학생2	
2.			일반 학생	
희망관(3학년)	1,3층()		4층()	

- 1,3층(순위 증명 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함.)
 - 1순위: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법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국가보훈 대상자),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 2순위: 원거리 학생1(타군 및 무주군 면지역 거주 학생)
 - 3순위: 원거리 학생2(무주읍이지만 버스 통학 학생, 대차리, 용포, 오산, 장백, 가옥, 내도, 유숙 등)
 - 4순위: 추첨(무주읍 포함, 통학 거리가 같은 학생 대상)
- 4층: 희망하는 3학년 학생 중, 남녀 비율(남 10명, 여 15명)에 맞춰 추첨으로 선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기숙사 입사 희망 학생 선정 및 학생 관리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이름,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기숙사 생활 종료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기숙사 입사 학생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임교사

인 (※ 신입생은 생략)

무주고등학교장 귀하

서 약 서

학년반 : 학년 반 번

성 명 : (성별)

※ 신입생은 성명과 성별만 기재

위 본인은 기숙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자랑스런 무주고인으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
2. 교칙과 기숙사 생활수칙을 지킨다.
3. 본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면학에 정진한다.
4. 전담 사감 및 담당 교사의 지도에 성실히 따른다.
5. 기숙사 운영규정을 숙지하며 이행한다.
6. 기숙사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에 따른다.
7.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도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진다.
8. 매월 말 일 이전 자진 및 강제 퇴사자에게 조·석식비 및 수익자 부담 운영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 명 (서명)

무주고등학교장 귀하

기숙사 퇴사원

학년반 : 학년 반 번
성 명 : (성별)

위 본인은 다음의 퇴사에 따른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숙사를 퇴사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입사자격)

- ③ 기숙사 생활에 대한 부적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자는 퇴사 후 다음 학기까지 재입사를 금지한다. 또한, 퇴사 이후 재입사 신청 시 한 번도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의 후순위에 두고 선발하고, 동등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퇴사 후 1년 후부터로 한다.

제16조 (퇴사 절차)

- ④ 퇴사는 매월 말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매월 말 일 이전 자진 및 강제 퇴사자에게 조·석식비 및 수익자 부담 운영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전학 등)일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할 수 있다.

퇴사 사유:

20 년 월 일

본 인 (서명)

보호자 (서명)

무주고등학교장 귀하